

시민고충처리위원회(지방옴부즈만) 고충민원 처리사례

□ 민원 제목 :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및 권리·의무승계

□ 신청 취지

- 신청인은 30년 동안 하천부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갱신 받아 거주하는 중 기허가자가 사망함에 따라 권리·의무의 승계 및 하천점용허가의 연장을 동시에 신청하였으나,
- 법적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함을 이유로 승계 및 허가연장 불가를 통보받았으나, 승인을 재고하여 주길 요청함.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「하천법 시행규칙」 제2조 규정 및 허가조건 제6호에 의거하여 권리·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·양수 또는 합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, 신청인은 기점용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약 150일이 지나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의 기간연장 및 권리·의무승계가 어려움.

□ 사실관계

- 신청인은 기점용자의 사망일(2020. 9. 25.)로부터 약150일이 지나 권리·의무 승계를 신고.
- 「하천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5항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칙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에서는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인 2020. 12. 31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미리 신청인에게 기간의 만료됨을 고지하여야 했지만, 실제로는 2021. 2. 15일 안내

공문이 송달되었고, 신청인은 이로부터 2주 이내에 기간연장을 신청함.

□ 관계 법령 등

- 「하천법」 제5조, 제33조, 제98조
- 「하천법 시행규칙」 제2조, 제19조
-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8조

□ 판단 및 결론

-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천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숙지하고 있다가 기점용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기간을 준수하여 기간연장 및 권리·의무 승계를 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, 그 기간을 지연한 사유로 신고 자체를 거부한 것은 신청인에게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. 이에 신청인의 하천점용허가의 연장 및 권리·의무승계신고를 허가하여 줄 것을 **시정권고** 한다.

□ 민원 제목 : 아파트 재건축조합 대의원회 소집 승인

□ 신청 취지

- 신청인들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 현재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나 지자체에서는 대의원회 소집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음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 조합장은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대의원회 개최를 청구하는 때에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바, 현재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이를 무시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니 지자체에서 대의원회 소집을 승인하여 주길 바랍.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해당 아파트 조합정관 규정에는 대의원회 소집승인을 위해서 미리 '법원의 승인'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 도시정비법령에서 대의원의 수, 선임방법,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현재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할 수 없으나, 조합 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의결 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면 대의원회 승인여부를 검토 가능함.

□ 사실관계

- 해당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연락두절상태로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며, 감사직은 해임으로 부재인 상황에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소집이 어려움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44조제5항에는 대의원회 소집을 위해 '시장·군수등의 승인'을, 해당 조합의 정관 제26조

제6항에는 '법원의 승인'을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로 내용이 충돌됨.

□ 관계 법령 등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4조, 제45조, 제46조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43조, 제44조

□ 판단 및 결론

- 「도시정비법 시행령」 제44조제5항에는 '시장·군수등의 승인'을 받아 대의원회를 소집한다고 규정하는바, 해당 민원의 조합정관에서 '법원의 승인'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을 반하여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있다. 이에 시장·군수등이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 선임을 위한 대의원회 소집을 승인할 것을 **의견표명** 한다.